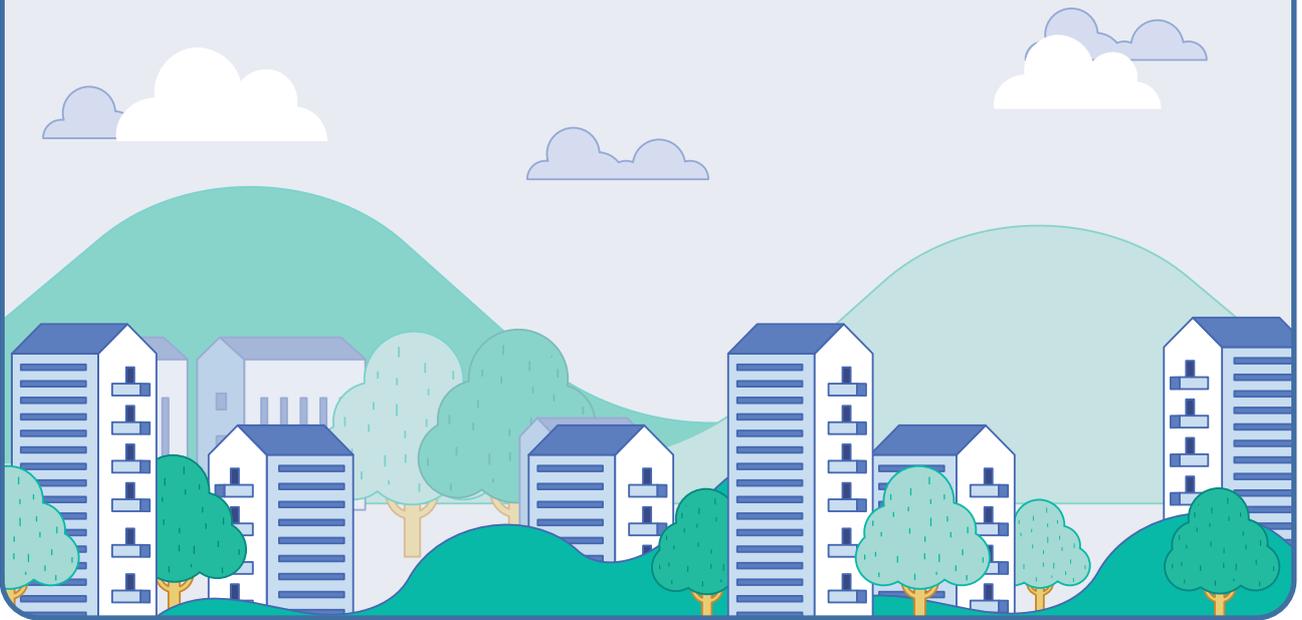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2026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2.26.(목)]





# C O N T E N T S

1.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	6
2. 신청기간 및 장소.....	7
3. 신청자격 및 순위 .....	8
4. 동일순위 경합시 선정기준 : 배점항목표 .....	14
5. 임대조건 .....	15
6.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16
7. 입주대기자 선정결과 발표 .....	19
8. 기타사항 .....	19
9. 문의처 .....	21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22
1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25
[별지 1] 기존주택등 매입 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27
[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29
[별지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31
[별지 4]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33
[별지 5]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35
[별지 6] 예비가구구성 확인서 .....	37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정기 공고일정

- 일반  
매입임대주택  
2월, 8월
- 청년  
매입임대주택  
6월, 12월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월, 9월
- 장기  
미임대주택  
2월, 8월

## 문자서비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 (0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다가구 · 원룸 · 매입임대주택

# 2026년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

서울시 거주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입주대기자를 모집합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6.02.26.(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해당 자치구 거주자)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신청 가능.  
\* 이외 자치구는 입주대기자 모집하지 않음 (임대주택 재고물량 및 매입계획 고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처리,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일에 맞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 (신청일자) 1순위 : 2026.03.16.(월) ~ 2026.03.18.(수)  
2순위 : 2026.03.19.(목) ~ 2026.03.20.(금)  
\* 1순위 모집인원 미달 시, 2순위 모집

## ▶ 신청자격(요약)

공통	공고일 현재(2026.02.26.)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 * 사업대상지역(자치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자격 요건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 의료 수급자</li> <li>• 보호대상 한부모가족</li> <li>• 주거지원 시급가구</li> <li>• 저소득고령자</li> <li>•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li> <li>•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li> </ul>
동일순위 경합시 대상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합 시, 아래 배점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 ※ 아래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하여 입주자 선정 시 불이익 없게 유의 (6. 신청시 구비서류 - 기본 제출서류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예 연속거주한기간(1점~3점)</li> <li>• 부양가족(1점~3점)</li> <li>•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여부(1점~3점)</li> <li>•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2점)</li> <li>•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2점~5점)</li> </ul>	

※ 자세한 사항은 3.신청자격 및 순위 및 4. 동일순위 경합 시 선정기준: 배점항목표 참고

# 01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신청이후 주택형 변경 불가)

주택유형	전용면적	모집인원	가구원수 <sup>1)</sup>
다가구	60㎡이하		모든 가구
원룸주택	50㎡미만		1인~2인 가구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원룸)도 신청가능.

## ▶ 자치구별 모집인원

자치구	계	다가구 (모든 가구)	원룸 (2인이하 가구)
합 계	1,470	1,250	220
강동구	180	150	30
강서구	100	100	-
관악구	20	20	-
광진구	50	50	-
구로구	200	200	-
금천구	100	100	-
노원구	40	-	40
도봉구	100	100	-
동대문구	70	70	-
동작구	60	60	-
마포구	50	50	-
서대문구	70	20	50
서초구	40	40	-
송파구	100	60	40
양천구	40	40	-
영등포구	60	40	20
은평구	100	100	-
중랑구	90	50	40

※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7) : 강남구, 강북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 자치구내 임대주택 재고물량 및 매입계획을 고려하여 모집인원 선발 제외

1)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 유의사항

- (공급방식)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및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의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2026.06.26.금)로부터 6개월 (~2026.12.25.금)입니다.**
- (공급방식 특성 확인 요망)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 소재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의 신규 물량 및 향후 발생예상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우선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 모두에게 유효기간 내에 입주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기간 및 장소

## ▶ 신청절차



##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 신청일정

- 1순위 모집인원 미달 시 2순위 모집 (신청 상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
  - 1순위 : 2026.03.16.(월) ~ 2026.03.18.(수)
  - 2순위 : 2026.03.19.(목) ~ 2026.03.20.(금)

※ 주택유형(다가구, 원룸)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이후 주택유형 변경은 불가함.

# 03 신청자격 및 순위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2.26.)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
  -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고일 이후신청 자치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 불가합니다.
  -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에서 중복신청이 발견될 경우, 모두 탈락처리)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 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②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 **성년자** :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 2007.02.26.이전 출생)를 말함.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함)
    -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일 경우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녀와 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b>외국인 배우자</b>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b>외국인 직계존·비속</b>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b>태아</b>	세대구성원의 태아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적 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순위별 자격요건**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1961.02.26.이전 출생)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이하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세부기준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격확인증명서로 대체)

구분		입주자격요건						
소득		구분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2,518,715원 이하	3,286,202원 이하	3,813,487원 이하	4,289,044원 이하	4,515,524원 이하	4,866,543원 이하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238,348 원 이하	4,381,602원 이하	5,338,881원 이하	6,004,662원 이하	6,321,734원 이하	6,813,160원 이하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4,317,797원 이하	6,024,703원 이하	7,626,973원 이하	8,578,088원 이하	9,031,048원 이하	9,733,086원 이하
		※ 위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가구는 기준금액에 20%p, 2인가구는 기준금액에 10%p 가산된 금액임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소득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당 평균금액(351,019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당 평균금액(491,426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당 평균금액(702,038원) 합산하여 산정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23,700만원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아래표와 같이 가산						
		구분	출산자녀 수 (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없음 (기준)	자녀 1인 (+10%p 가산)	자녀 2인 (+20%p 가산)			
	총자산 가액	23,700만원 이하	26,100만원 이하	28,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5,020만원 이하	5,476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 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가액에 가산 (위 자산가액 표 참고)						
		- 소득 자산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총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구분	산정방법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li> </ul>
총자산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li>•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li> </ul>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b>높은 차량가액</b>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21.04.13)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への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04 동일순위 경합시 선정기준 : 배점항목표

-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총점이 동일한 경우 배점항목표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 ▶ 단,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자치구)의 최종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 및 최종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
- \* 사업대상지역(자치구)의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확인이 가능한 전입일자만 인정, 말소의 경우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내 연속 거주한 기간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② 부양가족(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7항의 세대원)의 수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 별도가점 1)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명:1점, 2명:2점, 3명 이상:3점) 2)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 1점 3)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1점	별도 가점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납입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2점
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사용대차 등 임차료가 0인 경우 임차료 부담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 제외)	가. 80%이상	5점
	나. 65%이상 80%미만	4점
	다. 50%이상 65%미만	3점
	라. 30%이상 50%미만	2점

# 05 임대조건

<p>임대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14회(최장 30년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 다만 재계약시 1순위 신청자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li> <li>•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li> <li>•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이후에는 퇴거해야 함.)</li> </ul> <p>※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7조제3항, 제4항 및 별표5 참고</p>												
<p>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개별안내)</li> <li>•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b>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음</b></li> </ul> <table border="1" data-bbox="379 974 1428 1187"> <thead> <tr> <th>구분</th> <th>다가구</th> <th>원룸</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td> <td>25.6㎡ ~ 60㎡</td> <td>14.0㎡ ~ 49.9㎡</td> </tr> <tr> <td>임대보증금(평균)</td> <td>25,801,043원</td> <td>22,493,219원</td> </tr> <tr> <td>임대료(평균)</td> <td>266,460원</td> <td>216,277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계약시에는 <u>관련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u></li> </ul>	구분	다가구	원룸	전용면적	25.6㎡ ~ 60㎡	14.0㎡ ~ 49.9㎡	임대보증금(평균)	25,801,043원	22,493,219원	임대료(평균)	266,460원	216,277원
구분	다가구	원룸											
전용면적	25.6㎡ ~ 60㎡	14.0㎡ ~ 49.9㎡											
임대보증금(평균)	25,801,043원	22,493,219원											
임대료(평균)	266,460원	216,277원											
<p>상호전환제도</p>	<table border="1" data-bbox="379 1276 1428 1653"> <tr> <td data-bbox="379 1276 566 1507"> <p>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전환</p> </td> <td data-bbox="566 1276 1428 1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비율 :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li> <li>※ 일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li> <li>• 전환이율 : 연 6.7%</li> <li>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 납부</li> </ul> </td> </tr> <tr> <td data-bbox="379 1507 566 1653"> <p>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p> </td> <td data-bbox="566 1507 1428 16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li> <li>• 전환이율 : 연 2.5%</li> <li>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li> </ul>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의사항</li> <li>-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b>전환유형에 상관없이 연1회 신청 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b></li> <li>-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li> <li>-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li> </ul>	<p>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비율 :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li> <li>※ 일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li> <li>• 전환이율 : 연 6.7%</li> <li>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 납부</li> </ul>	<p>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li> <li>• 전환이율 : 연 2.5%</li> <li>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li> </ul>								
<p>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비율 :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li> <li>※ 일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li> <li>• 전환이율 : 연 6.7%</li> <li>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 납부</li> </ul>												
<p>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li> <li>• 전환이율 : 연 2.5%</li> <li>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li> </ul>												

# 06 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비사항	비 고
본인 직접 신청시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시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입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본 제출서류

구비사항	비 고	발급처
①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별지1 및 별지2) <small>*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small>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동 주민센터
④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동 주민센터
⑤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동 주민센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 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동 주민센터

구비사항	비 고	발급처	
배점 항목표 입증 서류 (해당자만 제출)	<b>납입인정회차 증명서</b>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6회 이하 납입한 자는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음 ※ 발급기준일 : 2026.02.26. ( <b>발급관리번호 : 2026980040</b> )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공고일 전일(2026.02.25.)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청약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 ( <a href="http://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a> )
	<b>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b>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공고일 이후 교부)	동 주민센터
	<b>임신진단서</b>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b>가구구성원 중 중증 장애인 있는 경우</b>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	동 주민센터
	<b>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b>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계약사실 확인원'으로 가능	신청자 구비
	<b>동일주소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b>	· 세대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 관리사무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동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동 주민센터
저소득 고령자	- 주거, 교육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동 주민센터 등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주거지원 시급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교육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li> <li>- 차상위 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동 주민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li> <li>-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도 접수가능</li> </ul>	신청자 작성

▶ 추가서류: 소득 50%이하자, 장애인가구(소득70% 및 100%이하자)

대상자	구비사항	비 고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li> <li>-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신청자 작성 (별지3 및 별지4) *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도 접수가능)</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li>·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i> <li>·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할 수 있음</li> </ul>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동 주민센터

▶ 기타서류(해당 시): 예비가구 구성확인서

대상자	비 고	발급처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신청하는 경우	· 분리 예정 세대원 표시하여 제출	신청자 작성 (별지6) *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07 입주대기자 선정결과 발표

예 정 일	2026. 6. 26. (금) 16:00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확인방법	① 공사 홈페이지 우측 메뉴 “인터넷청약시스템” → 대상자 조회·제출 → 기타조회 →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조회 ② 공사 콜센터 ARS 당첨자 조회 : ☎1600-3456 → 4 누르고 3(입주대기순번 조회)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 ③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 08 기타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 또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에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li> <li>단, 계약자(그의 배우자 포함)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 후 세대를 분리하면 계약 및 입주 가능 합니다.</li> <li>입주대기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주택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li> </ul>
개별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b>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b></li> </ul>
주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b>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b>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li> </ul>
주택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선정은 공사의 안내에 따라 주택확인 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li> <li>공급대상 주택에는 <b>월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과 월임대료의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b>이 있으므로 주택선정 시 제공되는 임대주택 상세현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택 미선정자 및 미계약자는 추후 공급 시 신청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ul>

<p>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격(해당 자치구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 또는 한부모자격 등 순위별 자격요건)을 <b>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b></li> <li>• 신청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b>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b>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첨취소·계약해제 및 해지됩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li> <li>• 입주자(세대구성원 포함)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li> <li>• 입주 후에도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ul>
<p>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대기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가 <b>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b></li> <li>-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ul>
<p>주택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공고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b>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b> 휠체어 등을 이용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다가구원룸주택 유의사항) 다가구 및 원룸주택은 면적이 협소하여 세대내 김치냉장고, 냉장고 등 대형가전제품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li> <li>• 매입임대주택 중 승강기(전기, 소방 등 포함)가 설치된 주택은 관할센터에서 전문 관리업체를 위탁 선정할 경우 이에 동의해야하며,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li> <li>• 일부 매입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를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li> <li>•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ul>
<p>주소변경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대표전화(☎1600-3456)로 연락주시고,</b>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등기로 송부 바랍니다. (주택선정 및 계약에 대한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함)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 미 통보 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등기우편 발송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매입주택공급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우편번호 : 06336)</li> <li>• <b>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주소변동 사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주택선정 및 계약에 대한 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입주대기자 순번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b></li> </ul>

양도전대 금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li> </ul> <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제49조의8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li> </ul>

## 09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계약 및 입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1600-3456)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관련 상담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 02. 2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금융자산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21.04.13.)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への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11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사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련 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일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 (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안내를 받았습니니다.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구청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 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_\_\_\_\_ (인)

년 월 일

**구청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연락처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input type="checkbox"/> 고시원·여인숙 <input type="checkbox"/> 비닐하우스 <input type="checkbox"/> 옥탑방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시설 <input type="checkbox"/> 컨테이너·움막 <input type="checkbox"/> PC방·만화방 <input type="checkbox"/> 반지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용도	용자 지원	제출처		
<p>위 사람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직인</span></p>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http://www.i-sh.co.kr)

**콜센터 1600-3456**